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7호)

제 안 설 명



2021.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 기 열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과 시민들이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한글화 및 용어순화 등의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20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 제9판으로 개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려운 한자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권고용어에 해당되는 “자인”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권고용어인 “스스로 인정”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